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609호 2023. 12. 08.(금요일)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23-21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3
- 하동군 고시 제2023-215호 공유수면 점용 허가 고시 5
- 하동군 고시 제2023-218호 하천 점용 변경 허가 고시 6

입법예고

- 하동군 공고 제2023-1580호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7
- 하동군 공고 제2023-1587호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1

일반공고

- 하동군 고전면 공고 제2023-16호 고전장례식장 단시간 근로자 채용 공고 30
- 하동군 공고 제2023-1584호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실시계획인가 공고 41
- 하동군 공고 제2023-1589호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공고 43
- 하동군 공고 제2023-1590호 화개천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공고 45

회									
람									

발행 : 하동군 편집 : 기획예산과 (055)880-2041, 행정2041

하동군 고시 제2023 - 214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 11. 29.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부여 :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한계길 77 외 2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3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11. 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부여사유	비 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대곡리 45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한계길 77	20231129	옥산에서 흐르는 차고 맑은 물이 마을 앞을 흘러가므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219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노전길 63-1	20231129	갈대가 많이 자라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78	경상남도하동군옥종면미산길 23-13.	20231129	뒷산이 눈썹같이 생겼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하동군 고시 제2023-215호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11. 30.

하 동 군 수

1. 허가(승인)번호 : 2023-00056
2. 허가연월일 : 2023. 11. 30.
3. 점·사용의 목적 : 생활환경 정비사업(농업기계보관시설)
4. 점·사용의 장소 및 면적 : 고전면 성평리 171-1, 463㎡
(인근지번 : 고전면 성평리 172-13)
5. 점·사용의 기간 : 2023.11.30. ~ 영구
6.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 : 하동군수(건설과)

하동군 공고 제2023-1580호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 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교통약자법 시행령 제14조의 4(특별교통수단의 운영 기준)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보행 장애인의 이동지원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시간, 이용 대상 등을 전국적으로 일원화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가.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제2항 제3호 신설
 -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판정자
 - 나.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영 등) 제1항 개정
 -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 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지역) 제1항 개정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지역은 경상남도 관할지역과 하동군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 인근 특별시(부산광역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 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라.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항 각호 개정

-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인은 2023년 12월 29일까지 하동군(참조 : 안전교통과, 055-880-2396 FAX 055-880-2249, polaris12@korea.kr)에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을 “시행규칙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관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외 이용 시 병원목적에 한하여 최대 2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하여 하동군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판정자

제11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증보행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장애인

나. 임산부 및 영유아에 해당하는 사람: 임신확인서 및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다.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 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라.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서

제12조제1호 중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 3호”로 한다.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제16조제4항 전단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홈페이지)”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경상남도 관할지역과 하동군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 인근 특별시(부산광역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4.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 번호		결 재	접수자	(결재권자)	(결재권자)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세요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관계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 용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 . .	성별	(남/여)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유형	교통약자 유형	<input type="checkbox"/> 장애(장애 급)			<input type="checkbox"/> 65세 이상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상생활상태	독립	부분도움	완전도움	의사소통	가능	불가능	
	휠체어	전동	수동	없음	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	본인	보호자	없음
생활형태	거주형태	단독주택	연립	아파트	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	급여종류()		해당무
	가족(동거인)수	명			보 조 인	있음	없음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
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하동군수(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mm × 297mm

[뒤쪽]

신청서 작성 안내

-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한정하여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신청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본인 확인 서류
 - 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 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1부. 이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에는 뒷자리 7자리 숫자를 삭제하고 제출합니다.
 -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가. 중증보행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 나. 임신부 및 영유아에 해당하는 사람 : 임신확인서 및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다.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 라.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 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③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추가 서류 제출이나 방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서 약 서

본인은 「하동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고 이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으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법 제2조제8호 및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 략) ② (생 략)</p>	<p>제8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 시행규칙 제6조제3항----- -----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p>
<p>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생 략)</p>	<p>제10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① (현행과 같음)</p>
<p>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단서 신설></p>	<p>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① ----- ----- 하며 관내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외 이용 시 병원목적에 한하여 최대 2시간 대기하여 복귀할 수 있으며, 그 이상 소요 시 별도 접수하여 하동군 차량으로 복귀할 수 있다.</p>
<p>1. ~ 2. (생 략) <신 설></p>	<p>1. ~ 2. (현행과 같음) 3. 65세 이상의 자로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까지 판정자</p>
<p>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생 략)</p>	<p>제11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심사) ① (현행과 같음)</p>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 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생 략)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 주민 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복지용구)

나. 그 밖의 사람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등급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② -----

-----.

1. -----

가. (현행과 같음)

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

2. -----

가. 중증보행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나. 임산부 및 영유아에 해당하는 사람: 임신헌인서 및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 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계약 여부와 이용계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

3. (생 략)

③ ~ ⑧ (생 략)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제14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 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다.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라. 65세 이상으로 장기요양등급 1등급부터 3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서

3.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

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은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과 인접 생활권으로 한다.

② ~ ④ (생략)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제17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경상남도 관할 지역과 군과 경계를 접하는 지역, 인근 특별시(부산광역시)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 지역을 변경·조정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

-----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선정신청 접수와 이용대상자 여부 확인
2.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및 안전 관리
3.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4. 출발지·도착지·이용목적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 등에 대한 중
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
행물의 발간 및 보급

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
원에 필요한 사항

② ~ ⑥ (생략)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

5.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
단의 홍보

6.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 ⑥ (현행과 같음)

하동군 공고 제2023-1587호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안
2. 제안 이유 : 하동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조)
 - 나. 바우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지원시기에 관한 사항(안 제2조~제4조)
 - 다. 바우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바우처 카드관리시스템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바우처카드 사용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 바우처 카드의 수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아. 사업비의 정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자. 환수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차.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입법예고 기간 : 2023. 12. 8. ~ 2023. 12. 29.(21일간)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23년 12월 29일까지
하동군 주민행복과 ☎ 055-880-2342, FAX 880-7199,
e-mail kyh0422@korea.kr로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안(별표, 별지서식 포함)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단,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및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바우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바우처카드 지원금은 연 6만원(반기 3만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확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연령이 반기에 도래한 경우는 해당 반기부터 지급하며, 전입한 경우 다음 반기부터 지급한다.
3.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4조(지원시기)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우처카드를 제작하여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대상자에게 반기별로 교부한다.

제5조(지원절차 등) ① 바우처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2조의 지원 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바우처카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바우처카드를 분실한 사람은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 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업무협약)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목욕 사업주(목욕업소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바우처카드 발급 금융업체와 「어르신 목욕 바우처카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7조(카드관리시스템 운영·위탁) 군수는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바우처카드 사용) ① 바우처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군 소재 목욕업소 중 주소지 읍면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단, 목욕업소가 없거나 장기간 휴장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바우처카드의 사용기한은 바우처카드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

③ 바우처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9조(카드의 수불관리) 군수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카드 배부현황을 전산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제10조(사업비의 정산 등) 제6조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업체는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 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

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의 전출, 사망이 확인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2조(지도·감독)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뒷면)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하동군 어르신 목욕바우처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사업의 카드 신청 및 발급	지원 종료 후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사업의 카드 신청 및 발급	지원 종료 후 5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에 동의하십니까?(예, 아니오)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 각 호와 동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민감정보	하동군 어르신 목욕 바우처 지원 사업의 카드 신청 및 발급	지원 종료 후 5년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어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어르신 목욕 지원 카드 제작사	바우처 카드 제작 및 관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사후관리 종료 시까 지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법률에 의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법률상의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인적사항 및 그밖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필요시)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하동군 고전면 공고 제2023-16호

고전장례식장 단시간 근로자 채용 모집 공고

고전장례식장 업무를 수행할 단시간 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2. 04.
고전면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관련부서	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고
고전면 주민생활지원부서	단시간 근로자	고전장례식장 운영관리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례식장 시설·물품관리 등 ○ 장례 상담 및 장례절차 안내 	

2. 채용방법

1. 1차 : 서류 전형
 2. 2차 : 면접 전형
- ※ 채용예정 인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면접 생략 가능

3. 응시자격

-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우선채용)
- 장례식장에서 관리원 및 염사(염습)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 공고일 전일 현재 고전면에 주소를 둔 주민
-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제 9조(결격사유) 】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②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 근로자로 채용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고 확인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채용기간

- 채용기간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장례발생 시 수시근무)
- ※단, 예산상황을 고려하여 근무기간 연장·단축 운영 가능함

5. 근로조건

- 근무기관 : 고전장례식장
- 근무시간 : 장례발생 시 근무
 - 06:00부터 18:00사이 장례발생시 근무(8시간)
 - 18:00부터 06:00사이 장례발생시 근무(8시간)
- ※ 상호 협의하여 조정가능
- 보 수 : 1일 83,530원 (2024년 하동군 노임단가 기준 - 특수업무)
- 신 분 : 단시간 근로자
- 기타사항 :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에 의함

5. 우대사항

- 장례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 장례식장에서 관리원 및 염사(염습)로 1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 응시원서 제출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3cm x 4cm)을 응시원서 해당란에 부착
- 이력서 1부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장례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 ※ 제출서류가 누락된 경우 응시원서에 기재된 내용 불인정.

7.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12. 04.(월) ~ 2023. 12. 15.(금)
- 접 수 처 : 고전면 주민생활지원담당
- 접수방법 : 본인 직접방문 접수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
 - ※ 면접일정은 서류심사 합격자에게 개별 통보
 - 응시인원이 미달한 경우에는 면접시험 미 실시
- 합격통지(예정) : 2023. 12. 21.(목) (합격자 개별통보)

8. 시험 시행일정 및 합격자 발표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2023. 12. 18.(월)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 2023. 12. 20.(수) (인원미달 시 생략)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2. 21.(목)
- ※ 상기 일정은 우리 면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기타사항

- 응시원서의 착오 기재 또는 누락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채용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동사항은 별도 공지합니다.
-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 및 관련법령(규정)을 적용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문의 : 고전면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 (055-880-6197)

응 시 원 서

본인은 「고전장례식장 단시간근로자채용」 공개모집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같으며 만일 허위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 년 월 일

성 명 (인)

주 소					☎ 자택 핸드폰
최종학력	대학교이하	년 월	학교 (과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대 학 원	년 월	대학교	대학원 년	졸업, 재학, 수료, 중퇴
경 력 및 자 격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 근무 년 월 일 취득 (자격증)				
※응시번호		성 명	(한글) (한자)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반명함판 (3cm×4cm) 탈모상반신 사진으로2매 같은 원판사진
응시분야	<input type="checkbox"/> 장례지도사	생년월일	19 년 월 일(만 세)		
		주민등록번호	~		

※ 응시번호	응 시 표 고전장례식장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사 진
응시분야	<input type="checkbox"/> 장례지도사	성 명		
		생년월일	19 년 월 일생 (만 세)	
2023 년 월 일 고 전 면 장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1. 주소

: 주소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고 전화번호는 현재 연락 가능한 곳을 기재합니다.

2. 최종학력

: 대학교 이하란은 응시자 모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대학원 졸업, 재학, 수료, 중퇴인 응시자는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3. 경력 및 자격

: 공무원 또는 사회의 실제 근무한 경력을 기재하되 근무 관서명 및 직급을 기재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실이 있으면 이를 기재합니다.

4. 생년월일

: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기재하고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만 연령을 기재합니다.

5. '※' 표시란 : 응시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자 기 소 개 서

○ 주 소 :

○ 성 명 :

○ 생년월일 :

2023. . . .

작성자

(서명)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의거 성장과정, 가족사항, 좌우명, 응시동기, 전공분야 및 경력 등을 자유롭게 작성하되, 이전 업무수행 경험과 향후 업무 수행계획 포함 되도록 기술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본인은 하동군에서 실시한 (채용과정명 기재)과 관련하여 「하동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 규정」 제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은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 없음'을 확인하고, 이후 채용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에 '채용 무효'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023년 월 일

위 확인자 :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전면장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에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에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하동군 공고 제 2023-1584호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재해복구 사업
- 나. 명 칭 : 악양천 재해복구 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하동군수
- 나.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가. 위 치 : 하동군 악양면 미점 ~ 신성리 일원
- 나. 면 적 : 372,068m²
- 다. 규 모 : 제방보강(우안) L=2.226km, 축제 및 보축(좌안) L=2.259km,
부대공 1식 등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사업 착수일 : 2022년 4월
- 나. 준공 예정일 : 2024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자료 참고

- 편입면적은 사업 및 행정절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결과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이의를 제기하시 바랍니다.

6.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 열람

- 장 소 : 경남 하동군 건설과
- 기 간 : 2023. 12. 07. ~ 2023. 12. 22.(15일간)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건설과 하천담당(055-880-25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토지 및 지장물 조서(별첨). 1부.

하동군 공고 제 2023-1589호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재해복구 사업
- 나. 명 칭 : 두곡지구 지구단위 종합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하동군수
- 나.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가. 위 치 :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 화심리 지내
- 나. 면 적 : 372,068㎡
- 다. 규 모
 - 호안 : 식생블럭 설치 L=196m-전석쌓기 L=221.5m
 - 고지배수로 1식, 게이트 펌스 1식, 부대공 1식 등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사업 착수일 : 2022년 3월
- 나. 준공 예정일 : 2024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자료 참고

- 편입면적은 사업 및 행정절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결과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이의를 제기하시 바랍니다.

6.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 열람

- 장 소 : 경남 하동군 건설과
- 기 간 : 2023. 12. 08. ~ 2023. 12. 23.(15일간)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건설과 하천(055-880-25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토지 및 지장물 조서(별첨). 1부.

하동군 공고 제 2023-1590호

화개천 재해복구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화개천 재해복구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08일

하 동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재해복구 사업
- 나. 명 칭 : 화개천 재해복구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하동군수
- 나. 주 소 :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가. 위 치 : 하동군 화개면 탑리 일원
- 나. 면 적 : 4,057m²
- 다. 규 모 : 홍수방어벽 설치 L=448m, 옹벽설치 3개소, 부대공 1식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가. 사업 착수일 : 2022년 3월
- 나. 준공 예정일 : 2024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붙임자료 참고

- 편입면적은 사업 및 행정절차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열람결과 소

유권 등 권리관계가 열람한 조서의 내용과 다른 경우 이의를 제기하시 바랍니다.

6.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 열람

- 장 소 : 경남 하동군 건설과
- 기 간 : 2023. 11. 24. ~ 2023. 12. 09.(15일간)

7.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건설과 하천(055-880-253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토지 및 지장물 조서(별첨). 1부.